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681
----------	-------

발의연월일 : 2023. 8. 7.

발의자 : 윤한홍 · 권성동 · 윤창현

김희곤 · 엄태영 · 서범수

박성중 · 홍문표 · 권명호

강기윤 · 김성원 · 유경준

최형두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  
지사의 요청을 받아 산업단지 등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을 자유  
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한편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제정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근거하여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되고 이후 해당 법이 2000년 「자유  
무역지역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인 1970년에 공업지역인 상태로 지정되어  
현재 전국 7개 자유무역지역 중 산업단지가 아닌 곳은 마산자유무역  
지역이 유일한 상황임.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다른 산업단지형 자유  
무역지역과 비교했을 때 수출이나 고용 면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 사업 등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낮은 건폐율 적용으로 인해 입주기업의 투자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어 왔음.

이에 종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지정된 수출자유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보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둘으로써, 마산자유무역지역을 다른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처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무역을 진통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신설).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장에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종전 수출자유지역의 국가산업단지 간주에 관한 특례) 종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지정된 수출자유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8호가 목의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50조(종전 수출자유지역의 국 가산업단지 간주에 관한 특례)</u></p> <p><u>종전 「수출자유지역 설치법」</u> <u>에 따라 지정된 수출자유지역</u> <u>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도 불구하고 같</u> <u>은 법 제2조제8호가목의 국가 산업단지로 본다.</u></p>